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양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에서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을 밝히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1조).

○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문장순화와 표현의 명확화(안 제3조, 안 제21조,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56조)

- “충청북도 안에” ⇒ “충청북도에”
- “도지사는 충청북도 안에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세계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지사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재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는”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다. 자주 사용되는 약어의 표기(안 제23조)

-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라. 중복표기 및 중복내용의 삭제(안 제30조, 안 제38조)

-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삭제
-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 “관리단체의”

마. 애매한 기준의 수정(안 제30조제2항제8호)

- “무형문화재의 지정취지와 어긋난 보존관리 행위 또는 원형보존 및 전수 교육이 부적합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38조)

-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 별지서식1부터 별지서식4까지 신설

사. 각 호에 대한 설명삽입과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안 제49조)

○ “도지사,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의 검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때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도지사, 시장·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아. 문장의 주어 삽입(안 제45조, 안 제56조)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 “제1항에 따른”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 지정 등에 관한 서식을 제시하였으며,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변경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